

시네마테크KOFA 영화관 운영 규칙

제정	2009.	4.	10
개정	2010.	7.	1
개정	2012.	12.	18
개정	2014.	1.	14
한국영상자료원 규칙 제30호 개정	2014.	9.	26
한국영상자료원 규칙 제43호 개정	2015.	12.	23
한국영상자료원 규칙 제57호 개정	2017.	5.	19
한국영상자료원 규칙 제113호 개정	2023.	10.	24
한국영상자료원 규칙 제132호 개정	2025.	12.	1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영상자료원(이하 “자료원”이라 한다)의 시네마테크KOFA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네마테크KOFA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24.>

제2조(용어 정의) ① “시설”이라 함은 시네마테크KOFA에서 운영하는 공간, 설비, 장비 및 관련 자원을 통틀어 말한다.

② “대관”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공연, 교육, 학술, 문화·예술, 국제회의, 학술, 영화 상영(이하 “행사”라 한다) 등의 개최를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네마테크KOFA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영화관”이라 함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자체에서 운영하는 영화 상영 및 관련 행사를 위해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④ “이용자”라 함은 “대관” 및 “영화관”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 제1항의 대관 절차를 통해 자료원의 승인을 득한 개인 또는 단체는 “신청인”라 말한다.

⑤ “자체 행사”라 함은 자료원 자체 혹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연, 전시, 교육, 학술, 문화·예술, 국제회의, 학술, 영화 상영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23. 10. 24.]

제3조(역할) 시네마테크KOFA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네마테크KOFA 기본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네마테크KOFA 영화 상영 관련 시설 운영
3. 시네마테크KOFA 대관 서비스 관련 시설 운영
4. 기타 시네마테크KOFA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23. 10. 24.]

제4조(운영) ① 다음 각호와 같이 휴관을 실시한다.

1. 정기휴관: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창립기념일(1.18), 근로자의 날(5.1), 매주 일요일 및 월요일
2. 임시휴관: 임시공휴일,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② 제1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 10. 24.]

제 2 장 시네마테크 KOFA 대관

제5조(대관 범위 및 조건) ① 한국영상자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시네마테크 KOFA의 자체 프로그램·교육·행사, 시설 관리·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영화관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영상문화의 보존, 보급,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및 학술활동
2. 영상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상영, 강좌, 세미나 등 문화예술행사
3. 영상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4. 국가가 주최·주관하는 국제회의 등의 행사 <신설 2023. 10. 24.>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신설 2023. 10. 24.>

② 대관할 수 있는 시네마테크KOFA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전 제2조에서 이동 2023. 10. 24.>

1. 시네마테크KOFA 영화관 1관
2. 시네마테크KOFA 영화관 2관

[중전 제3조 ② 삭제 <2015. 12. 23.>]

제6조(대관 신청) ① 신청인은 시네마테크KOFA 대관 신청서(서식 제1호)를 행사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긴급한 행사로서 신청 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2.>

②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행사일 7일 전까지 상영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료원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공문으로 시네마테크KOFA 대관 신청서를 대신할 수 있다.

[중전 제4조 ① 전문 개정 2023. 10. 24.]

제7조(대관 승인) ① 원장은 신청 건별로 자료원이 정한 내부 절차에 따라 사용 승인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고, 시네마테크KOFA 대관 신청 회보서(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사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사용 승인을 결정함에 있어, 시설·설비·장비 훼손 시 원상 복구 명령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복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료원에 보상하도록 한다. <개정 2025. 12. 12.>

③ 사용신청서 허위 작성 등에 따른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협의하여 대관 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2.>

④ 제1항에 따라 시네마테크KOFA 대관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시네마테크KOFA 시설 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일 7일 전까지 시네마테크KOFA 대관 변경(취소) 신청서(서식 제3호)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중전 제4조 ②③④에서 이동 및 개정 2023. 10. 24.]

제8조(대관 우선순위) 원장은 영화관 사용 신청이 중복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시네마테크KOFA 영화관 업무 및 행사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개인 간에 신청 일정이 중복된 경우에는 영화인, 학술연구자, 학생의 순으로 한다.
2. 단체 간에 신청 일정이 중복된 경우에는 영화 관련 단체, 교육 및 학술 연구 단체, 비중이 큰 행사를 신청한 단체의 순으로 한다.
3. 단체와 개인 간에 신청 일정이 중복된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4. 자료원이 공동주최하는 비영리적인 행사 및 국가가 주최·주관하는 국제회의 등을 우선으로 한다. <신설 2023.10.24.>
5. 기 이용자의 우선순위는 최하로 한다. <신설 2023.10.24.>

제9조(대관료 산정 및 납부 및 반환) ① 대관료는 시설 및 장비 사용료(별표 제1호)에 따라 산정한다.

② 시네마테크 KOFA 영화관 시설 사용 신청 회보서를 받은 신청인은 사용일 7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2.>

③ 납부된 대관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5. 12. 12.>

1. 자료원의 귀책사유로 대관이 불가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체 대관일을 우선 제공하며,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3. 신청인이 사용일 7일 전까지 대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4. 신청인이 사용일 6일 전 이후 또는 당일에 대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5.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대관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시네마테크 KOFA 대관 변경(취소) 신청서(서식 제3호)를 제출하여 자료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12.>

⑤ 자료원은 신청인의 취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2.>

제10조(대관료 면제, 조정)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자료원이 공동주최하는 비영리적인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3. FIAF의 아카이브 회원이 상호 무료 이용 원칙을 적용하여 사용하는 행사
4. 원장이 영화관의 사업 목적에 부합한 활동으로 영상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5. 독립영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 이용료를 최대 50% 이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1. 자료원이 후원하는 비영리적인 행사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비영리 기관에서 주관하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직접 제작한 독립영화의 기술 시사를 위하여 시설(2관)을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25. 12. 12.>

③ 제 2항 제3호에 따라 대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참석 스태프 명단을 필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2.>

제11조(대관 내용의 변경) ① 신청인은 승인받은 대관 행사 내용을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② 대관 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상당한 사유와 함께 변경 요청일이 대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 변경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행사 예정일의 7일 이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③ 원장은 자료원의 업무, 국가적인 주요 행사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미 승인한 영화관 시설의 사용 기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대관의 신청제한, 취소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화관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및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또는 상영
2. 특정 종교의 포교·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또는 상영
3. 영화관 시설·장비의 관리 유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또는 상영
4. 입장권 판매 등 수익이 발생하는 행사 또는 상영
5. 개인, 기업체, 민간단체의 상업적 목적의 홍보 행사 또는 상영
6. 개인 기업체·사설단체 등의 기념행사, 시상식 등의 행사 또는 상영 <신설 2023. 10. 24.>
7. 신청인이 규정과 관련하여 고의적으로 준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신설 2023. 10. 24.>
8. 기타 자료원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 또는 상영 <신설 2023. 10. 24.>
9. 자료원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1회 이상 예약 부도 하는 경우 <신설 2023. 10. 24.>

② 원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해당 대관 행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중전 제10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 10. 24.>

1. 대관 신청 내용과 상이한 대관 행사를 할 때
2. 관계 법령 및 대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대관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자료원의 사전 승인 없이 대관 이용 시간 초과하거나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
5. 행사장 내·외의 부착물 등 건물 관리자가 정한 규칙을 위반한 때
6.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7. 기타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신청인은 자료원의 주요행사 일정이 긴급히 편성되어, 원장으로부터 대관 일정 조정을 요청받았을 경우에 자료원의 행사가 우선 순위가 되며, 신청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자료원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신청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중전 제11조 삭제 2023. 10. 24.]

제13조(신청인 준수사항) 신청인은 시설 사용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 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
2. 사용 기간 및 승인 받은 범위 내의 시설 사용
3. 사용 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 반입, 설치, 철거 및 부속장비 사용 등에 따른 사전 협의
5. 기타 자료원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

제14조(권리양도 금지) 시설 사용자는 대여받은 시설물과 대여 부대품의 사용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제15조(신청인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행사와 관련하여, 대관 준비에서 철거 기간까지 반입한 물품 및 설비의 관리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② 신청인은 대관 행사와 관련하여 설치했던 시설물과 장비를 대관 기간 내에 철수하고 대관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를 해야 하며,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③ 변상은 동일 현품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훼손 또는 망실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대관 행사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자료원은 대관 기간 중 행사와 관련하여 자료원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신청인은 자료원이 어떠한 경우라도 제 3자로부터 대관과 관련한 손해 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자료원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자료원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⑦ 제2항의 변상책임을 이행할 때까지 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3. 10. 24.]

제16조(규칙의 해석)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칙의 해석은 자료원의 관련 규정과 관계 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3. 10. 24.]

[중전 제15조, 제16조, 제17조 삭제 2023. 10. 24.]

제 3 장 시네마테크KOFA 영화관 운영

제17조(이용 대상) 시네마테크KOFA 영화관에서 운영하는 영화 관람 등급에 맞는 내/외국인 모두 포함한다.

[본조 신설 2023. 10. 24.]

제18조(이용료 및 이용 시간) 이용료 및 이용 시간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3. 10. 24.]

제19조(이용 제한) 원장은 관계 법령 및 자료원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민서비스 통합 운영 규칙에 따라 시설 이용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 10. 24.]

제20조(이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시설 및 장비등을 훼손·망실한 자는 3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변상은 동일 현품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훼손 또는 망실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변상책임을 이행할 때까지 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 10. 24.]

제21조(입금) 담당자는 발간물 판매비를 주간입금내역과 함께 회계 담당자에게 지정된 요일에 인계하여야 하며 회계담당자는 이를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 10. 24.]

제22조(규칙의 해석)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칙의 해석은 자료원의 관련 규정과 관계 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3. 10. 2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자료시사실 운영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0. 7. 1.>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시네마테크 KOFA 영화관 시설 이용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4. 1. 14.>

이 규칙은 2014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30호, 2014. 9. 26.>

이 규칙은 201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43호, 2015. 12. 23.>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57호, 2017. 5. 19.>

이 규칙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13호, 2023. 10. 24.>

이 규칙은 2023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32호, 2025. 12. 12.>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개정 2025. 12. 12.>

대관 사용료 기준				
구분	항 목	기준	사용료	비고
사용료	시네마테크KOFA 1관	1시간	300,000원	좌석: 321석(장애인석 4석포함) 스크린: 1,291x565(cm)
	시네마테크KOFA 2관	1시간	200,000원	좌석: 150석(장애인석 2석포함) 스크린: 880x483(cm)
자료 정리비 (보관자료)	35mm프린트, DCP	1편	‘자료 활용 규칙’ 자료 정리비 기준에 준하여 산정함	

○ 참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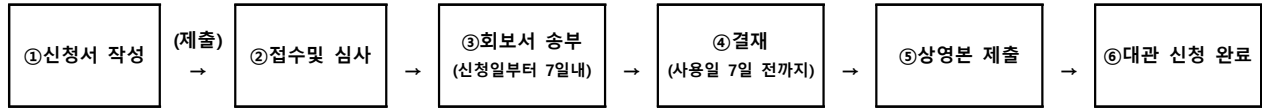
- 영사 장비 스펙은 1관 2관 모두 동일합니다.
35mm 영사기 : Simplex Projector
D-Cinema 영사기 : 4K/DLP(Barco)
동영상 플레이어 : MAC Pro
- 사용료는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하여 산정합니다.
- 자료 정리비는 자료원 보관 자료 이용 시에만 부과됩니다.
(자료원 보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 동의서 필수 제출해야함)
- 자료원의 승인 없이 사용시간 초과되거나 부대시설 추가 사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산정하며, 퇴실 조치 또는 향후 대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시네마테크KOFA 대관 변경(취소)신청서 작성 후 자료원의 허가를 득하지 않는 경우 사용료 환불은 불가합니다.

‘※ 해당 내용 □ 에 체크 및 기입 바랍니다.’

시네마테크KOFA 대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단체(개인)명				이 름	
	휴 대 폰					이메일
	주 소					
세부 사항	사용장소	☐ KOFA1관 ☐ KOFA2관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일, 시간)				
	상영매체	☐ 디지털 시네마 패키지(DCP) ☐ MOV 등 디지털파일 ☐ 35mm 필름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상영시간	분 초(※ 합본일 경우, 전체 상영시간 작성 요망)				
행사 내용	행 사 명					
	행사내용	※ 시네마테크KOFA 대관 행사 계획서 작성(뒷장) 필수				
	참가인원					
	반입물품	☐ 물품명: (수량: 개) ☐ 물품명: (수량: 개) ☐ 물품명: (수량: 개) ☐ 물품명: (수량: 개)				
기타	부대시설	항 목	수량	지원가능수량	※ 신청서에 기입되지 않은 항목은 추가 지원 불가	
		☐ 유선마이크	개	최대 2개		
		☐ 테이블	개	최대 2개		
		☐ 의자	개	최대 4개		
	감면혜택	☐ 자료원 후원하는 및 공동주최 행사 (50%감면) ☐ 비영리 기관에서 주관하는 학술, 연구 목적의 행사 (50%감면) ☐ 직접 제작한 독립영화의 기술 시사 (2관에 한해 50%감면) ※ 감면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위와 같이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KOFA 영화관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영상자료원장 귀하						
붙임 서류	1. 시네마테크KOFA 대관 시설 사용 행사 계획서 2. 시네마테크KOFA 대관 시설 사용 준수 협약서 3. 감면혜택 증빙자료 제출서					

시네마테크KOFA 대관 사용 준수 약약서

1. 대관 신청 및 승인 절차



가) 사용료 결제: 대관료를 기한 내 미납할 시 대관 자동 취소

나) 상영본 제출: 상영일 기준 최소 7일 전 직접 방문 제출(방문 전 연락 필수)

※ 사전 미제출 시 행사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제출 장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한국영상자료원 M1층 영사실(02-3153-2078)

2) 상영 매체 제출 관련

○ DCP: 비암호화 버전, 외장하드 포맷 NTFS만 가능(예: FAT, exFAT 등 불가)

○ 동영상: 권장 코덱 ProRes 422, H.264 / 용량은 100GB 이하(2시간 기준)

(mp4는 화질 저하 또는 사운드 밀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권장하지 않음)

3) 상영 작품이 다수일 경우, 하나의 파일로 합본하여 제출해야 함

4) 상영 파일은 영사실에서 자체 검수하며, 상영 전 테스트 상영은 불가.

다) 기타: 대관 시설 이용 변경 또는 취소 시 사용일 7일 전까지 '대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2. 아래 귀책사유로 시네마테크 KOFA 시설 운영에 불이익을 줄 경우 대관 승인 취소 및 퇴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①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대관 신청 시 작성한 시설 사용 목적 및 기재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③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④ 사전 협의되지 않은 녹음·촬영을 하거나 홍보 및 안내물을 무단으로 부착하는 경우

⑤ 안전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의 반입·설치·철거 시 본원 직원의 안내를 따라야 하며, 시설물 및 장비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4. 사전 승인받은 대관 시설의 사용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사용 시간을 초과하거나 부대시설을 추가로 사용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사용료가 부과되며, 즉시 퇴실 조치되거나 향후 대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사항은 대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6. 주차료는 사용자 부담입니다.

7. 자료원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8. 신청자는 한국영상자료원의 시설 이용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칙의 해석은 자료원의 관련 규정과 관계 법령 또는 관례에 따릅니다.

상기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약합니다.

신청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영상자료원장 귀하

시네마테크KOFA 대관 행사 계획서

행 사 명			
행사일시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일, 시간)		
	준비시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행사시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철수시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상세일정			
순서	행사내용	소요시간	비고
요 청 및 기타사항			
※ 행사 계획서는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혜택 증빙자료 제출서

증빙자료명

(이미지 첨부)

